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국민연금법」 개정(법률 제18608호, 2021. 12. 23. 공포, 2022. 6. 22. 시행)에 따라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, 지급정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, 절차 등 규정(안 제49조의2, 제56조의2)
-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직권 지급정지 기준을 마련하고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 전 소재불명 사실 해소 재촉, 미지급 급여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함
- 나. 저소득 일용근로자 소급지원을 위한 예외 규정(안 제73조의3)
- 소급가입된 기간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가 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2(유족연금의 지급 정지)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소재가 1년 이상 불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76조 제9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.

1.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없거나, 있음에도 그 신청을 하지 않는 때
2. 배우자가 아닌 2명 이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 모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, 일부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신청을 하지 않는 때
3. 배우자가 아닌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명인 경우로서 그 소재가 불명한 때

②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6조의2를 준용한다.

③ 법 제76조제9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후 그 유족연금의 다른 수급권자가 소재불명을 사유로 지급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그때부터 법

제7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제2항·제3항, 법 제76조제4항을 적용한다.

제56조의2를 제56조의3으로 하고,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6조의2(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) ① 법 제86조의2제1항에

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 공단은 수급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재불명 사실을 해소할 것을 재촉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86조의2제3항에 따라 지급 정지를 취소하고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미지급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은 법 제55조에 따른다.

제56조의2 앞에 “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”을 삭제한다.

제56조의3 앞에 “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”을 삽입한다.

제73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「소득세법」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일용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별표 2의2 제1호타목 중 “법 제100조의3제1항”을 “법 제100조의3제1항 및 법 제100조의4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거목 중 “법 제100조의3제1항”을 “법 제100조의3제1항 및 법 제100조의4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9조의2,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9조의2(유족연금의 지급 정지)</u> <u>①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소재가 1년 이상 불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76조제9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.</u> <u>1.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없거나, 있음에도 그 신청을 하지 않는 때</u> <u>2. 배우자가 아닌 2명 이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 모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, 일부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신청을 하지 않는 때</u> <u>3. 배우자가 아닌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명인 경우로서 그 소재가 불명한 때</u> <u>②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6조의2를 준용한다.</u>

<신 설>

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

징수 등

<신 설>

제56조의2 (생 략)

③ 법 제76조제9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후 그 유족연금의 다른 수급권자가 소재불명을 사유로 지급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그때부터 법 제7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제2항·제3항, 법 제76조제4항을 적용한다.

제56조의2(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) ① 법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 공단은 수급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재불명 사실을 해소할 것을 재촉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86조의2제3항에 따라 지급 정지를 취소하고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미지급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은 법 제55조에 따른다.

<삭 제>

제5장 비용 부담 및

연금보험료의 징수 등

제56조의3 (현행 제56조의2와 같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609